#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89 발의연월일: 2025. 2. 17.

발 의 자:박균택・김준혁・맹성규

김주영 · 김승원 · 양부남

한민수 • 추미애 • 박지원

박정현 • 박해철 • 한준호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을 공법, 민사법, 형사법 및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이하 "선택과목")으로 하고, 합산한 총득점으로 합격여부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택과목의 경우 개별 선택과목에 따라 요구되는 학습량이 상이하고 수험생 개인의 배경에 따른 과목별 유불리가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응시자의 과목 선택이 특정 과목에 편중되어, 다양한 전문분야 의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로스쿨 제도 도입 본래의 취지가 몰각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등 7개 선택과목 중에서 국제거래법, 환경법, 국제법 등 3가지 과목에 80%가 넘는 응시자가 몰려있고, 전국 로스쿨에서 선택과목 자 체가 폐강되거나 교수 채용도 중단되는 등 학문의 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임.

이에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법조윤리시험과 마찬가지로 그 점수를 총점에 합산하지 않고 일정한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얻었는지 여부만을 평가하도록 하여 응시생들이 관심 있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변호사시험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0조).

법률 제 호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논술형 필기시험"을 "논술형 필기시험(제9조제1항제4호의 과목에 대한 시험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각 과목 중"을 "각 과목(제9항제1항제4호의 과목은 제외한다)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조윤리시험은 합격 여부"를 "제9조제1항제4호의 과목에 대한 시험과 법조윤리시험은 각각 합격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제9조제1항제4호의 과목에 대한 시험과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제9조제1항제4호의 과목에 대한 시험과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각각 필요한 점수"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 정 안		
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생	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	2		
시험과 <u>논술형 필기시험</u> 의 점	논술형 필기시험(제9조		
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제1항제4호의 과목에 대한 시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한다.	<u> 험은 제외한다)</u> .		
다만, <u>각 과목 중</u> 어느 하나라	<u>각</u> 과목(제9항제1항제4		
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	호의 과목은 제외한다) 중		
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			
로 한다.	<b>.</b>		
③ 법조윤리시험은 합격 여부	③ 제9조제1항제4호의 과목에		
만을 결정하고, 그 성적은 제2	대한 시험과 법조윤리시험은		
항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아니	<u>각각 합격 여부</u>		
한다.	<b>.</b>		
④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b>4</b>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 선택			
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내에서			
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 각 과			
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제9조제1항제4호의 과목에 대		
<u>점수</u> ,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그	한 시험과 법조윤리시험의 합		
밖에 시험의 합격 결정방법은	격에 각각 필요한 점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